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10. 2.(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영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5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51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 (2018-53-461)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 헌 혁신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 이 헌 혁신기획담당관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에 대한 업무위탁 해지 및 방송통신사무소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소를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하기 위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를 거치면서 지난 9월 18일에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훈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서 회수한 위탁사무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내부위임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장이 내부위임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정 또는 업무처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훈령·예고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마련될 경우에는 현 규정은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훈령 제정안은 훈령 발령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지난번 보고 때와 동일한 사안이고 규제심사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8-53-462)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딜라이브 변경허가에 대해 동의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딜라이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금년 3월 30일 딜라이브는 현대HCN과 서초SO 매각 계약을 체결했고, 4월 26일 과기정통부에서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8월 8일 공정위는 조건 없이 승인한다는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8월 31일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에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여 9월 18일 방통위는 변경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대상은 딜라이브에서 서초SO를 분할하는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이고,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조건 없는 법인분할 변경 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심사위원회는 (주)딜라이브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 없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딜라이브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변경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안건은 딜라이브가 서초SO를 물적 분할하는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조건 없는 법인분할 변경허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것을 존중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분할변경 허가는 쟁점이 없는 행정

행위이므로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는 최다주주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들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할변경 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 개편의 전초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경과사항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공정위도 조건 없이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케이블 텔레비전 인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지만 앞으로 대형 유료방송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무처에서 관련 동향을 계속 잘 파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본인확인기관(신용카드사)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본인확인기관(신용카드사)의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민간아이핀사, 이통사, 신용카드사 등 총 13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9월 17일 NH농협카드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한 것을 계기로,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서비스의 범용성을 제고하고자, 추가적인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11년 10월에 민간아이핀 3사, '13년 1월에 이동통신 3사, '18년 4월에 신용카드 7개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17일 NH농협카드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함에 따라 기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심사 계획을 안내했고, 추가적인 신청이 없음에 따라 NH농협카드 1개사를 대상으로 지정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대상 사업자의 명칭은 농협은행(NH농협카드 분사)입니다. 아래박스의 현황을 보시면 회사 개요는 현재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14부문 1분사로 이루어져 있고, NH농협카드 본사는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나머지 부문과는 달리 독립된 인사·재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발급자 수는 신용카드 610만명, 채권카드 1,630만여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주요 심사

항목입니다. 먼저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입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방지, 접속정보의 위·변조 방지 등 법령에서 정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술적 노력 관련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술 인력 8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 총 92개 사항을 심사한 후에 '적합', '부적합', '보완'으로 평가하게 되고, 모든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주요 심사절차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또는 정기점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기술·법제·회계 분야 총 7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또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심사 결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추가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까지 현장실사 결과를 보완 요청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해서 보고는 12월 셋째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의 심사를 요청한 신청사가 농협카드인데 우리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도 따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추가적인 신청은 없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과문한 탓에 잘 모르지만 신용카드사가 전체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카드만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전문계 카드사가 있고, 은행이 카드를 겸영하는 은행계 카드사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카드사는 전문계 카드사에 해당되고, 은행계 카드사에 대해서는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신용카드 7개사가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다 전문 은행을 끼고 있지 않은 카드전문회사라는 것이지요?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실익이 없다, 아니면 신청이 아주 까다로워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려면 인력도 늘고 경비가 드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는 기존 본인확인기관으로 신청되어 있는 카드사의 발급자 수가 1,000만명, 많게는 국민카드 같은 경우 1,200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계 카드사가 추가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90개 심사항목이 대부분 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조치나 아니면 물리적인 보호조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해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안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하고 있는 곳은 신청을 기피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대부분 본인확인기관 중 이용자가 제일 활발하게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통3사입니다. 90% 이상 핸드폰으로 이통사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그 카드회사로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다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나 발급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대부분의 카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나 또는 개인보호의 감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원하는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로서는 본인확인기관이 그동안 공인인증서기관, 아이핀기관, 이통3사 이렇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확인기관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야 이용자들이 편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확인기관 숫자를 좀 더 넓히자는 측면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했고, 신용카드사는 이미 이통3사 본인확인기관 시장이 많이 안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6월

까지도 통계를 보니까 이통3사가 인증한 건이 6억 8,000만건이 됩니다. 주로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이 편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들이 전문계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온라인 쇼핑물에서 결제할 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동통신사 쪽을 이용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카드사가 있으면 카드사를 통한 본인확인 인증 과정이 더 편리하고 수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법적 요건에 맞추어서 본인확인기관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해 주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 입장은 알겠는데 신청하지 않는 이유 중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도 농협카드가 본인확인 지정 신청 의사가 있어서 하나만 심사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카드사들에게 다 알려져 혹시 신청 의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고 공개까지 해서 모집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망법상 준비하는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은행계 카드사들은 신청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법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른 본인확인 업무수행도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가 본인확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문 등 생체인증으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들도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카드사 입장에서 기술적인 법제 또 회계 분야 측면에서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혹시 심사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문턱이 아주 높다, 이런 부분 카드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현재까지는 7개 신용카드사는 사전에 준비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없었고, 농협카드는 심사과정에서 미흡하면 다시 보완요청하고 그리고 종전에는 시범서비스를 하고 본 지정을 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은 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확인 업무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CI 생성 정보와 연계시켜서 본인이 온라인상 상거래에 있어서 본인이 진실된 본인인지를 확인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내주면 개인정보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편의를 우리가 넓혀 주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이 좀 더 많이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또 카드사 입장에서는 별 실익이 없고 비용만 많이 들고 심사가 아주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NH농협카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방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 은행카드 같은, 중소규모의 은행카드 계열사에서도 본인확인기관에 관련된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까? 그쪽까지 공지가 된 것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저희가 은행계 카드 포함해서 수요는 받았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런데 신청한 회사는 없었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별도의 신청의사는 없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농협카드 말고도 전문계 카드회사 가운데 규모가 큰 우리카드의 경우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사실상 BC카드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맞습니다. 우리카드 같은 경우 가입자 관리를 BC카드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카드 이용자는 대부분 BC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아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 전체의 이용 편의성, 범용성을 위해서는 많이 알리고 참여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전체가 이용실태 9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통신사를 통한 본인확인기관 이용 실태 이후 특별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문제제기되는 사안들은 없습니까?

○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특별히 파악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민간 아이핀 사용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신용카드가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통신사 이용률이 워낙 높다면 집중적으로 이용자가 높은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되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에 나왔듯이 NH농협카드가 독립된 인사·재무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은행

지주와 분리해서 엄격한 보호조치나 아니면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해 엄중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55분 폐회 】